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823
------------	-------

발의연월일 : 2019. 4. 15.

발의자 : 백승주 · 정양석 · 김도읍  
김영우 · 강석호 · 이주영  
이종명 · 추경호 · 김한표  
이은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일정기간 이상 재직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한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에 있어 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범위에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서 군 복무경력이 있는 조사위원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여 명확한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6호 신설).

법률 제 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5. (생략) <u>&lt;신설&gt;</u>	1. ~ 5. (현행과 같음) 6.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③ · ④ (생략)	<u>사람</u> ③ · ④ (현행과 같음)